

부속서 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대한민국

## 주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에는 제1.6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자유화되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유보에 의하여 그러한 분야에서 터키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기재한다.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가. 한국에 의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및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기재하는 첫 번째 열
- 나. 첫 번째 열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1.4조(시장접근)에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 다. 첫 번째 열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1.5조(내국민대우)에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그리고
- 라.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1.4조(시장접근) 및 제1.5조(내국민대우)에 따른 양허표 작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을 기술하는 네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제 1.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가 제 1.5 조(내국민대우)에도 불합치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제 1.4 조(시장접근)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 1.5 조(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네 가지 다른 공급형태가 이 양허표에 기재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 가. “1) 국경 간 공급”의 공급형태는 제 1.1 조제 2 항가호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 나. “2) 해외소비”의 공급형태는 제 1.1 조제 2 항나호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 다. “3) 상업적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 1.1 조제 2 항다호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 라. “4) 자연인의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 1.1 조제 2 항라호에 따라 영업 목적의 자연인의 일시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4. 제 1.4 조(시장접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재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한국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5. 한국은 제 1.6 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부속서 가(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부속서 가(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나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은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시민권,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 또는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한국의 이민 및 노동 법을 준수한다.

6.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CPC 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 77 호, 1991 년 잠정 CPC 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7.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1.4조(시장접근) 및 제1.5조(내국민대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에서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및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 내에서 법적 거주지를 가질 필요)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터키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 수평적 양허</p>			
<p>“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을 말함.</p>			
<p>“**” CPC 코드 번호 위의 이중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함.</p>			
<p>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p>	<p>3)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p>	<p>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a)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p> <p>(b)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li> <li>-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li> <li>-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li> </ul>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p>	<p>4)<sup>1</sup> <b>핵심인력 및 상용서비스판매자</b> 부속서 가(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른 약속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b>대졸연수생(GT)</b> 아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CPC 861, CPC 862, CPC 863, CPC 851, CPC 853, CPC 82201**, CPC 82202**, CPC 82203**, CPC 82204**, CPC 82205**, CPC 82206**, CPC 83104, CPC 832, CPC 86761**, CPC 86763**, CPC 86769**, CPC 633, CPC 8861, CPC 8862, CPC 8863, CPC 8864, CPC 8865, CPC 8866, CPC 874**, CPC 7512**, 통신 서비스, CPC 8929**를 제외한 유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CPC 9401**, CPC 9402**, CPC 641, CPC 642, CPC 6431**, CPC 7471, CPC 87905, CPC 96191, CPC 96192, CPC 7472, CPC 7211, CPC 7212, CPC 7111, CPC 7112, CPC 71233**, CPC 9702, ISIC 개정판 3.1<sup>2</sup>: 011, 012, 013, 015.</p>	<p>4)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p>	

<sup>1</sup> 대졸연수생에 대한 제한 중 이중별표가 붙은 CPC 코드에 관하여, “약속 안함”의 범위는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관련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약속 범위와 동일함.

<sup>2</sup> 이 양허표에 기재된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제4호,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I. 분야별 구체적 약속</b>			
1. 사업 서비스			
<p>A. 전문직 서비스</p> <p>a. 법률 서비스 (CPC 861)</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p> <p>(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p> <p>(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p> <p>(iii)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p> <p>(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대표 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법자문사는 일 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i)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p> <p>(ii)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 법률 사무소” 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주식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p> <p>i)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 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p> <p>ii)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p> <p>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함.</p> <p>iv)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터키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터키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터키가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기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p> <p>v)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과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p>	<p>1)2)3) (a)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음.</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음.</p> <p>(b) (a)에서 공급이 허용된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외의 회계 및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p> <p>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p> <p>(i)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p> <p>(ii) 공인회계사연수</p> <p>(iii) 감사기법전수, 그리고</p> <p>(iv) 정보교환</p> <p>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등록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p> <p>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p>
<p>c. 세무 서비스 (CPC 863)</p>	<p>1)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세무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및 세무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p> <p>세무조정서비스는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유한회사)에 소속된 세무사만이 공급가능.</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p>	
<p>d. 건축 서비스 (CPC 8671)</p>	<p>1) 상업적 주재<sup>3</sup>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2)4) 한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p> <p>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합격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p> <p>(a) 건축설계 I, 그리고</p> <p>(b) 건축설계 II</p>

<sup>3</sup> 상업적 주재는 법인일 필요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처리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u>연구개발 서비스</u></p> <p>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p> <p>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p> <p>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D. <u>부동산 서비스</u></p> <p>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p>	<p>1) 약속 안함.</p> <p>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 용에 대한 보상 등 정 부의 권한행사로 공급 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 외</p>	<p>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p>E. <u>운영자를 동반하지 않 니하는 임대/리스 서비 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 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 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sup>4</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 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4</sup> 83105\*\*: CPC 83105 중 15 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F.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p> <p>a. 광고 서비스 (CPC 871)</p> <p>b.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CPC 864)</p> <p>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p> <p>d. 프로젝트 경영 및 그 밖의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 순도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sup>5</sup>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5</sup>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임업부수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 서비스 제외) (CPC 881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li> <li>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소당 2천만원 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li> </ol>			
<p>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각조사 서비스 (CPC 86752)</p> <p>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p> <p>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는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1) 인쇄 (CPC 88442**) <sup>6</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6</sup>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인쇄, 그래픽어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2)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p>B. <u>쿠리어 서비스</u> 국제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p> <p>법으로 한국 우정당국이 현재 권리를 가지는 서비스는 제외함.<sup>7</sup></p> <p>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p> <p>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항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li> <li>2) 제한 없음.</li> <li>3) 국제 쿠리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상 기반 업무로 제한됨.</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li> <li>2) 제한 없음.</li> <li>3) 국제 쿠리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상 기반 업무로 제한됨.</li> <li>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ol>	

<sup>7</sup> 「우편법」에 따르면, 한국 우정당국은 신서를 수집, 처리 및 배달하는 독점권을 보유함. 그러나 이 법은 민간사업자가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서류를 포함하는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u>통신 서비스</u></p> <p>a. 음성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전용회선 서비스</p> <p>o. 기타</p> <p>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PCS(개인통신 서비스)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접속 서비스)  PSTN(공중교환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전화) 서비스</p>	<p>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p> <p>2) 제한 없음.</p> <p>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됨.</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sup>8</sup>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함.</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sup>9</sup>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sup>8</sup>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sup>9</sup>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u>부가 서비스<sup>10</sup>:</u>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 포함한 고도/부가 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sup>11</sup></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전송서비스<sup>12</sup> 공급을 허용함.</p>

<sup>10</sup> “부가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sup>11</sup>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 3 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sup>12</sup>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임대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u>시청각 서비스</u></p> <p>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p> <p>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p> <p>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건설 서비스 (CPC 511-518)</p>	<p>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유통 서비스 <sup>13</sup>			
A.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 서비스 (CPC 61111,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홍삼 도매업 및 62229 중 곡분 및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 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a) 중고자동차 도매업, 그리고 (b)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sup>13</sup>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른 승인을 받아야 함.</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C. <u>소매 서비스</u>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담배, 쌀 및 홍삼 제외), 632)</p>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 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p> <p>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p> <p>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만을 개설할 수 있음.</p> <p>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자는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D. <u>프랜차이징</u> (CPC 8929**) <sup>14</sup></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14</sup>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5. 교육 서비스<sup>15</sup></p> <p>C. <u>고등교육 서비스</u><sup>16</sup> (CPC 923**)</p> <p>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p> <p>다음은 제외함.</p> <p>(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p> <p>(ii) 유아·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서비스</p> <p>(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p> <p>(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sup>17</sup>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 다만,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p> <p>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p> <p>수도권지역<sup>18</sup>에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p> <p>현지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함.</p> <p>교육부장관은 각 교육기관의 학생수를 제한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15</sup>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한국에서 전문직 직업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sup>16</sup>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sup>17</sup>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sup>18</sup>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성인 교육 서비스<sup>19</sup> (CPC 924**) 사립 성인 교육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 교육 서비스</p> <p>다음을 제외함.</p> <p>(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 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p> <p>(ii)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p> <p>(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p> <p>(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서비스</p>	<p>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p> <p>교육감은 학원비를 조정할 수 있음.</p> <p>수도권 지역에서 총 건평 3,000 평방미터 이상의 성인 교육 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p>	

<sup>19</sup>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다음 분야별 약속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내의 서비스를 제외한 CPC 9403 및 CPC 9406에 따른 서비스에 관련하여,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1.5조(내국민대우)의 의무는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형태 1부터 3까지에 대하여 적용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4조(시장접근)의 의무는 그러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함.			
A. <u>폐수 서비스</u>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 <sup>20</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폐기물 처리 서비스</u>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sup>21</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기타</u>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시험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sup>22</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20</sup>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sup>21</sup>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sup>22</sup>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 (CPC 940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컨설팅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금융 서비스			

두주(頭註): 모든 금융 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sup>23</sup>
2.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 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함.
4. 금융 서비스 부속서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5.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다른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6. 한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

<sup>23</sup> 이 두주(頭註)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용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한국이 그러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 권유를 허용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한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한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됨.</p> <p>7. 한국은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한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할 것임.</p> <p>8.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될 수 없음.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p> <p>9.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본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p> <p>10.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p> <p>11.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p> <p>12.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p> <p>13.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p>			
<p>A. <u>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p> <p>(i) 직접보험</p> <p>a) 생명보험 서비스</p> <p>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 포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보험중개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보험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 <sup>24</sup> b) 보험계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u> : 다음의 하위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 <sup>25</sup> (ii) 대출 <sup>26</sup>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 서비스 <sup>27</sup>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퍼센트까지(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sup>28</sup>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sup>24</sup>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sup>25</sup>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행위

<sup>26</sup>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행위

<sup>27</sup>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행위

<sup>28</sup> “인” 및 “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ii) 결제 및 청산 <sup>29</sup>	<p>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 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 퍼센트 중 큰 금액임.</p> <p>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을 초과함. 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 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sup>29</sup>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행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다음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됨.</p> <p>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p> <p>b) 외환</p> <p>c)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p> <p>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p> <p>e) 양도성 증권</p> <p>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피 포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운용 :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d) 신탁 <sup>30</sup> (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0</sup>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i)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sup>31</sup>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1) 제한 없음. <sup>32</sup>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신용정보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퍼센트 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언급되는 “금융 정보” 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함.

<sup>32</sup> 한국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의 보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 그러한 정보 취급에 관한 금융 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규제기관의 능력 및 기술 시설의 위치에 대한 요건과 같은 일정 조건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xi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p> <p>a) 투자 자문</p> <p>b) 신용평가 및 분석</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 투자자자문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31**) 다만,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  음식제공 서비스 (CPC 6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여행알선대행 서비스</u>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관광객 안내 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p>A. <u>해운 서비스</u></p> <p>국제운송 (CPC 7211, 7212)</p> <p>연안운송 제외</p>	<p>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제한 없음.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p> <p>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선</li> <li>2. 예선 지원</li> <li>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li> <li>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li> <li>5. 선석 배정</li> <li>6. 항행원조</li> <li>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li> <li>8. 비상보수시설</li> <li>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li> </ol>
<p>*주석:</p> <p>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 함.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 <sup>33</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CPC 741**) <sup>34</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3</sup>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sup>34</sup>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sup>35</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 <sup>36</sup>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sup>37</sup>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5</sup>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sup>36</sup> CPC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sup>37</sup>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검수, 검정 및 검량 서비스 (CPC 745**) <sup>38</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항공운송 서비스</u> <sup>39</sup>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38</sup> 검수, 검정 및 검량 서비스는 해상운송 분야에만 적용됨.

<sup>39</sup>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E. <u>철도운송 서비스</u></p> <p>a. 여객운송(CPC 7111)</p> <p>b. 화물운송(CPC 7112)</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산업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F. <u>도로 운송 서비스</u></p> <p>a. 카보타지를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운송 (CPC 71233**)</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p> <p>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다만, LPG 운송을 제외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H. <u>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u></p> <p>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 (CPC 742**)</p> <p>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u>그 밖의 운송 서비스</u>  복합운송 서비스  철도화물 주선 <sup>40</su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40</sup> “철도화물 주선”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 그리고 화물적재/하역 및 배달을 포함하는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부수 서비스를 말함.

## 첨부 1

### (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 첨부 2

### (성인 교육 서비스)

성인 교육 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및 안전관리
  -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및 피아노 조율
  - (c) 산업 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상담 및 텔레마케팅
  - (d)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및 병원코디네이터
  - (e)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 (f)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및 관광
  - (g)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 (h)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 (i)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및 번역
  - (j)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및 공무원시험
  - (k)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및 옹변
  - (l) 독서실<sup>41</sup>: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교습 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서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시민단체,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sup>41</sup>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가는 장소